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39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이수진 · 김 윤 · 박희승
김남희 · 김태년 · 서영석
이학영 · 임오경 · 송옥주
박해철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

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지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격의 조사, 확인,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하기로 수급권

자의 동의를 받은 날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날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 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 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u> <u>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 신할 수 있다.</u></p> <p><u>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 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 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u></p>	<p><u>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지급) ①</u>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격 의 조사, 확인,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u></p> <p><u>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으며, 사회</u></p>

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하기로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은 날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날로 본다.